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00
----------	-----

2024. 1. 3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4년 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월 24일

-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제8조)
-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 필요성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12.10. 시행)되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내 장애예술인의 창작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이 장애인으로 광범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근거로 미흡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부족하여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현재 7개 자치단체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표 참조).

[표] 광역자치단체 장애예술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3.12.31.기준)

연번	시·도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2	충남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4. 30.
3	광주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1. 06. 01.
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1. 05. 20.
5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3. 25. (전부개정)
6	부산*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1. 12. 19. (전부개정)
7	경북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23. 05. 25.

* 서울, 부산의 경우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문화시설"의 용어를 정의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행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단체에게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내 관련기관의 장과 장애예술인등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안 제7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안 제8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안 제9조)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함.
- ‘안 제10조’는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안 제2조’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관련 개정이 필요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시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본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고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충청북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도지사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6조 제4호를 삭제한다.

관련 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 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요인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나. 추계결과

- 1) 산출과정
 -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 20,000천원
 -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1식 x 20,000천원 = 20,000천원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 30,000천원 (2025년 추진, 3년마다 실시)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1식 x 30,000천원 = 30,000천원
 - 2) 산출결과 : 연간 20,000천원,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60,000천원 소요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160,000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1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60,000		30,000			30,000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220-38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세 출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160,000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30,000			30,000	60,000	
재원 조달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160,000
	지방세	20,000	50,000	20,000	20,000	50,000	1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